# 최 신 판 례 예 규

#### Marketing Tax consulting

세금계산서 발급 후, 법원 판결에 의해 증감금액이 확정되는 경우,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

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대가가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,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따라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경우 부가령 §70①(3)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

사전법규부가-510, 2023.10.18

### ▮질 의

•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급가액 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 서 발급방법

## ■회 신

- 갑법인이 을법인과 체결한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계약(이하 "쟁점계약")에 따라 을법인으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(이하 "쟁점용역")를 공급받고 을법인이 갑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
- 1.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 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.
- 쟁점계약에서 정한 월 최대 트래픽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트래픽(이하 "초과공급 용역")의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 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

경우 초과공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.

3.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
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감면 적용 요건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 요로 하지 아니함

기준법무법인-146, 2023.12.14

## ▮질 의

- A법인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('농어업경영체법')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 로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5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
- 다만,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 이후 2017.11월경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\*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 록함
  - \* 농어업경영체법§4 농어업 ·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·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

# 질의

-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적용 시「농어업경영 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요건인지 여부
  - (1안) 감면적용 시 필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음
  - (2안) 감면적용 시 필수요건에 해당함

2024·07·24 www.eAnSe.com 9

## ▮회 신

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「농어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및 제 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은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
특수관계법인인 B에 A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A의 순자산가액(자산 및 부채)을 상증세법 §61부터 §65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평가하는 경우,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이연수익에 대하여는 회계상 장부금액에 해당 이연수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(유보금액)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

사전법규재산-867, 2024.01.24

## ▮질 의

• 본건 사업 양수도 거래에 있어 양도인인 신청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이연수익(부채계정)을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하여 거래하는 경우, 그 평가 금액을 회계상 장부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회계상 장부금액에 세무상 유보를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

#### ▮회 신
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◎◎◎◎의 한국지점인 A가 특수관계법인인 B에 A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A의 순자산가액(자산 및 부채)을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, 회계상부채로 계상한 이연수익에 대하여는 회계상 장부금액에 해당 이연수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(유보금액)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하

는 것입니다.

징수유예가 있은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하더라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징수의 유예는 유효하므로 징수유예의취소사유가 없는 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(회생채권)에 충당할 수 없음

서면징세-4602, 2023.12.08

## ▮질 의

• 회생절차 종결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과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

# ■회 신
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제140조 제2항에 따른 징수의 유예기간 중 회생절차가 종결되고 체납자에게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징수의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체납액에 그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. 다만, 「국세징수법」제16조에 따라 납부기한등 연장의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 장이 법원에서 인가한 회생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 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